

— 구미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—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4년 4월 21일

나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4년 4월 21일

라. 상정일자 : 2004년 4월 27일

제8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생활복지국장 김 경 배

나. 제안이유

- 자활공동체 및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생산적 복지실현의 인프라 확충
- 장학기금과 통합 관리 운용함으로써 유사성격 기금운용의 효율성 도모

다. 주요내용

- 기금조성 재원의 구체화 (안 제2조, 안 부칙 제3조)
 - 생활보호적립기금 ⇒ 기초생활보장기금 (258백만원)
 -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⇒ 저소득자녀지원을 위한 장학기금 (234백만원)
-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규모 확대 (안 제8조)
 - 5천만원 범위내에서 5년거치 5년균분상환, 연리5%

- 구미시정조정위원회가 기금운용계획수립 후 의회 심의의결(안 제10조)
- 분리계정, 결산보고등 사후관리 강화규정을 둠(안 제4조, 제12조)

라. 참고사항
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, 동법시행령 제41조~제46조
- 시·도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표준안(보건복지부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춘 배
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에 의거 기초생활보장 기금과 기존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통합하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·운용코자 하는 조례안임.
- 안 제8조 3항중 자활공동체에 대한 대여자금의 이자를 연5%로 규정한 것은 타 조례 및 시중금리에 비해 이율이 높은 편이므로, 이자를 연3%로 하향 조정하여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 부칙 제3조 경과조치는 내용이 불명확 하므로 “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” 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,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 론 요 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 가결